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가단524424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650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가단5244248 판결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김윤석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순일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49,820,025원 및 그 중 49,819,802원에 대하여 2020.

9. 14.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 사이에 2020. 3. 13. 체결된 매매계약을「49,820,025원과 그 중 49,819,802원에 대한 2020. 9. 14.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49,820,025원과 그 중 49,819,802원에 대한 2020. 9. 14.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7.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소외 은행에 제출하고 2019. 7. 22. 소외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기업운전분할상환대출)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5. 6.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 2018. 2. 1. 이후는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당하거나, 폐업 내지 영업을 정지하거나, 조세공과를 체납하거나,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20. 4. 22.경부터 소외 은행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20. 5.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0. 9. 14. 소외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50,636,802원(원금 50,000,000원 + 이자 636,8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0. 9. 14. 위 대위변제금 중 817,000원을 회수함으로써 그 잔존 대위변제금은 49,819,802원(50,636,802원 - 817,000원)이 되었고, 그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223원 $[817,000원 \times 10\% \times 1(2020. 9. 14. \sim 2020. 9. 14.) \div 365, 원 미만 버림]$ 이다.

라. 피고 회사는 2020. 3. 13. 피고 회사 대표자인 D의 동생인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23968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9,2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

49,820,025원(49,819,802원 + 223원) 및 그 중 49,819,80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11. 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시인 2020. 3. 13.경에는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1달여 만인 2020. 4. 22. 피고 회사는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며, 나아가 2020. 9. 14.경 실제로 원고가 소외 은행에 피고 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자신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D의 사위인 F이 G으로부터 매수하였던 것인데, 대출승계 등을 위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F이 피고 B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거나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인 49,820,025원 및 그 중 49,819,80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49,820,025원과 그 중 49,819,802원에 대한 2020. 9. 14.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49,820,025원과 그 중 49,819,802원에 대한 2020. 9. 14.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

별지

부 동 산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광주시 H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주시 I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지층, 1층 각 130.88㎡

2층, 3층 각 131.27㎡

4층 71.0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J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60.24㎡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광주군 K 대 472㎡

대지권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472분의 52.44 끝.

